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675
----------	-------

발의연월일 : 2026. 9. 30.

발 의 자 : 박해철 · 박정현 · 임호선
장종태 · 최기상 · 박민규
김남국 · 김태선 · 박 정
오세희 · 박용갑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저고도 운항 항공기의 활용이 확대되고 도심항공교통(UAM) 등 새로운 항공교통체계의 도입이 추진됨에 따라 다양한 고도와 운항 환경에서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기상정보 제공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항공 기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이 항공 기상정보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사용료 체납에 따른 연체금의 부과 및 이율 등에 관한 법률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난·재해로 인한 수색·구조, 산불 진화 및 예방, 응급환자 이송 등의 목적으로 저고도를 운항하는 항공기에 필요한 기상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도심항공교통의 안전한 운항을 위한 기상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의 납부 지

연에 따른 연체금의 부과·산정 및 체납된 사용료의 강제징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지원하고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 징수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5, 제14조의6, 및 제37조제4항·제5항 신설).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5 및 제14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5(저고도 항공기상정보의 제공) ① 기상청장은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운항하는 항공기를 대상으로 저고도[해발고도 3,048미터(10,000피트) 이하를 말한다]의 기상현상에 대한 기상정보(이하 “저고도 항공기상정보”라 한다)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재난·재해 등으로 인한 수색(搜索)·구조
2. 산불의 진화 및 예방
3. 응급환자의 이송 등 구조·구급활동
4. 그 밖에 공공의 안녕·질서유지·국가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저고도 항공기상정보의 내용 및 제공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6(도심항공교통기상정보의 제공) ① 기상청장은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심형항공기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항을 위한 기상정보(이하 “도심항공교통 기상정보”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도심항공교통기상정보의 대상구역, 내용 및 제공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의 연체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금을 일단위로 징수한다. 이 경우 연체금의 한도는 체납된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사용료 및 제4항에 따른 연체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아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항공 기상정보 사용료의 징수 등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체납된 항공 기상정보 사

용료 및 연체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4조의5(저고도 항공기상정보의 제공) ① 기상청장은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운항하는 항공기를 대상으로 저고도[해발고도 3,048미터(10,000피트) 이하를 말한다]의 기상현상에 대한 기상정보(이하 “저고도 항공기상정보”라 한다)를 제공하여야 한다.</u> <u>1. 재난·재해 등으로 인한 수색(搜索)·구조</u> <u>2. 산불의 진화 및 예방</u> <u>3. 응급환자의 이송 등 구조·구급활동</u> <u>4. 그 밖에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국가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u> <u>② 제1항에 따른 저고도 항공기상정보의 내용 및 제공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u>
<u><신 설></u>	<u>제14조의6(도심항공교통기상정보의 제공) ① 기상청장은 「도</u>

제37조(항공 기상정보 사용료의
징수 등) ① ~ ③ (생략)

<신설>

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심형항공기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항을 위한 기상정보
(이하 “도심항공교통기상정보”
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도심항공교통
기상정보의 대상구역, 내용 및
제공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
다.

제37조(항공 기상정보 사용료의
징수 등) ① ~ ③ (현행과 같
음)

④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받
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사
용료를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
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
부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
의 연체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연체금을 일단위로 징수한
다. 이 경우 연체금의 한도는
채납된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신 설>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사용료 및 제4항에 따른 연체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아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